

● 제336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6. 18.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최호정 의원 등 10명
- 나. 제안일 : 2026. 6. 8.
- 다. 회부일 : 2026. 6. 9.
- 라. 의안번호 : 374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직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 반영 및 조항의 현실화(안 제7조)
-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부여(안 제29조제20항 신설)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3)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6. 12. ~ 2026. 6. 16.(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정진영)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 1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책무와 조직문화에 관한 규정을 최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인용법령의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자기돌봄 특별휴가 신설(안 제29조제20항)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그리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개정안 제29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특별휴가) ① ~ ⑱ (생략) <u>&lt;신 설&gt;</u>	제29조(특별휴가) ① ~ ⑱ (현행과 같음) <u>⑳ 공무원은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u>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이 중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통한 근무능률 유지와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음.

-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특성과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부여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인정하고 있는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인정됨.
- 아울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과 직무 만족도 향상이 안정적인 의정지원 서비스 제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9조제14항과, 이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휴가 지침」에 따라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시책사업 추진, 적극행정, 업무혁신, 비상근무 수행 등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는 우수한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및 격려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부여 대상이 제한적이고 개별 성과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성 휴가와 는 성격이 다름.
- 반면 본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려는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특정한 성과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균등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기존 성과우수자 특별휴가와와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론 현행 연가제도와 각종 특별휴가,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휴가 신설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민간부문의 법정 연차휴가 수준과 비교할 때 공무원의 휴가 제도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함.
- 그러나 본 개정안은 연 1일 범위의 제한적인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공공부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직원 정신건강 증진, 일·생활 균형 지원 등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3 공무원 복무상 책무 규정의 현실화(안 제7조)**

- 한편, 개정 조례안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현실화 함.

<개정안 제29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 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 어야 한다. ② 삭 제	제7조(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 공 무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 과 협력의 근무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 현행 조례는 제7조에서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표현은 제정 당시의 조직문화와 행정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가 지향하는 조직 운영 가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근검과 절약’에서 ‘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으로 변경하고,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시대적 표현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비함으로써 변화된 행정 환경과 조직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 4 종합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조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복무환경과 조직문화에 관한 규정을 최근 공직사회의 변화된 가치와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아울러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운영, 의정활동 지원, 각종 현안 대응 등으로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자기 돌봄을 위한 최소한의 재충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조직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 역량 확보와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7688